**주식양수도계약서**

**제1조 (계약 목적물)**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별첨 1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주식매매대금)**

(1)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의 매매대금은 1주당 평균단가를 금[ ]원으로 하여 합계 금[ ]원(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별도로 진술 및 보증한 것과는 달리 숨겨진 부채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한다.

**제3조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1) 매매대금의 구성 및 지급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금 [ ]원(매매대금의 10%)

- 잔금 : 금 [ ]원(매매대금의 90%)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00년 00월 00일에 계약금을, 2000년 00월 00일(이하 “잔금 지급일” 또는 “종결일”)에 잔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면 합의로 1회에 한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변경된 종결일은 최초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이어야 한다.

**제4조 (경영권의 이전)**

(1) 매수인은 주식양수 후 기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하되, 현 경영진이 요청할 시 임원의 교체에 동의한다.

(2) 매도인은 전항에 의한 경영권 이전 이후에 발생한 회사의 문제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매도인들 이 지명한 이사가 매수인이 지명한 이사로 교체될 때까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인도)**

(1) 매도인들은 본 계약 제3.2조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직접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본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야 한다.

(2) 매도인들은 본건 주식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부, 관계당국 등에 대한 보고, 신고 및 공시 등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6조 (선행조건)**

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있어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이행은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교부한 모든 문서에 명시된 매도인들의 모든 진술 및 보장은 동 진술 및 보장을 행할 당시에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었어야 하며, 그러한 진술 및 보장이 종결일 및 종결일자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결일 현재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2) 종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매도인들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일 및 종결일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i)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의 완료를 제한, 금지하게 되거나 또는 (ii) 매수인이 매수자산이나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이를 제한, 금지하거나 또는 그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어떠한 법정 분쟁이 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제기될 우려도 없어야 한다.

(4) 본 계약체결일과 종결일 사이에 본건 사업이나 매수자산의 가치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경도 없어야 한다.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이란 (i) 전체적으로 재산, 사업, 운영, 수입, 자산, 채무, 재정여건 또는 본건 사업에 대한 전망, 또는 (ii) 본 계약상의 매도인들의 의무이행 능력 또는 (iii) 기타 실질적으로 본 계약의 집행가능성에 중대하게 불리하게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한다.

**제7조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된 내용이 본건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현재 모두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본건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고, 본건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매도인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이며, 매도인들은 본건 주식을 매수인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건 주식의 주권이 교부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제3자도 본건 주식에 대한 질권 등의 담보권 기타 계약 또는 법률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재무제표 : 매도인이 달리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도인들이 제시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4) 공개되지 않은 채무 : 매도인이 달리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우발채무, 불확정 채무 또는 기타의 채무가 없다.

(5) 법적 분쟁 등 : 매도인의 본건 사업 또는 매수자산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사 내 지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정부기관의 판결 또는 명령도 없다.

(6) 세금: 매도인이 달리 서면으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도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 기타 세금에 대한 신고를 적시에 제출하였으며, 그와 같은 세금 신고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제8조 (보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

(1) 매도인은 본 계약 제7조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부록 또는 매수인에게 제 공되었거나 제공될 증명서, 증서, 계약 또는 기타 서류에 명시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본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한다.

(2) 매도인은 연대하여 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조세 및 기타 관련 채무에 대하여 정산되지 아니하여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추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전부 배상한다.

**제9조 (매도인의 서약사항)**

(1) 매도인들은 본 계약서 체결 후 본건 사업인수가 완료되는 종결일까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영업활동을 넘어서 다액의 차입이나 채무부담 행위, 회사의 주요 자산의 매각, 임대, 기타의 처분, 자본적 지출, 중요 계약의 체결, 주주와의 거래, 임직원에 대한 보수, 임금, 퇴직금 기타 급여의 결정 등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의 가치, 영업, 재산, 자산, 부채상태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계약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제반 인, 허가 및 신고수리를 받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공시 등을 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상 매도인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제반 의무를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이행하며, 매도인은 기존 고객과의 본건 사업 관계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관계를 유지하고 본건 사업의 영업권을 유지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요구를 한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위반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전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기 이행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되, 이와 별도로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몰수하며, 매도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기납부금액의 두 배(기납부금액 포함)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8조(보장 등 위반) 및 제13조(비밀유지의 무 등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의 해제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매도인들의 관계)**

(1) 매도인이 복수인 경우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들의 권리행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복수인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들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나 통지는 매도인들 중 1인에게 행하면 매도인들 전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조세 및 기타 비용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각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매도인들은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별첨1 : 본건 주식 내역

매수인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매도인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